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 제 5,572호 1998. 9. 19

개 정 이 유

경제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개발부담금의 부담율 인하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주어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가. 개발부담금을 규정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경매 · 수용 등에 의한 경우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법 제10조제3항).

나. 1999년 12월 31년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그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함(법 제13조 및 부칙 제3조)

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본문중 "100분의 50으로"를 "100분의 25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의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인가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부기일의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